의안번호	2202383
의 뢰 인	허영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.
추계번호	24C2411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	동 법에 따른 급여 실시 등에 사용하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제외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3(소득인정액의 산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소득평가 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제외하는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액 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던 자가 신규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,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의 급여액이 증가(개정안에 따라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만큼 증가)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❑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

거나, 해당 요인으로 수급권 탈락을 우려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

○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신청자 중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자 및 급여 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하나,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어려움

❑ 또한, 현행법 제6조의3제3항(안 제6조의3제4항)은 실제소득,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·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 중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❑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